

무배당 월지급식 ELS의 정석
변액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월지급식 ELS 의 정석 변액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0년 3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 월지급식 (②) ELS의 정석 (③) 변액보험(④)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②), (③) 및 (④)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만15세~75세	일시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50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및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라. 쿠폰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쿠폰인출(이하 '쿠폰인출'이라 한다)금액(이하 '쿠폰인출금액'이라 한다)포함

(2)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1)'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용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및 쿠폰인출금액을 적용한다.

다. '22. 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이하 '일반계정 전환 계약'이라 한다)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15.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월대체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단위복리(연미만단리)로 부리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가'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외,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이체는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② 내지 ④의 펀드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마.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된 월대체공제액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제한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직후 계약자적립금이 일시납보험료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를 최소잔여적립금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쿠폰인출금액 포함)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

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금액(쿠폰인출금액 포함)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② 내지 ④에 해당하는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①의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 계약은 인출신청일에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일반계정 전환 계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한다.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	승낙일	

(2)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기본보험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대체공제액은 보험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약관 제25조(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약관 제26조(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23. 기타’의 ‘다.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 인출 및 쿠폰인출이 있는 경우, ‘20.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및 ‘22. 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감액,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쿠폰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또는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또는 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이하 상기 네 가지를 합한 보수를 ‘특별계정운영보수’라 한다)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주가지수ELS인컴형(이하 ‘ELS형 펀드’라 한다): 개별 호수(예: 인컴형 제1호, 인컴형 제2호 ...)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며, 개별 호수별로 파생결합증권[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 주가지수에 주로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의 투자는 5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시장하락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예

상되는 경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순투자비율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주가지수ELS인컴형 펀드 각 호수 별 설정일 또는 투자한 파생결합증권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투자금액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 효율적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MMF포함), 채권 등에 순자산(NAV)의 50%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국내주식형: 운용보수가 저렴한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임. 60~100% 이내로 국내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효율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③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임. 60~100% 이내로 전세계 채권섹터에 분산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④ MMF형: 이 펀드는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Call-loan 등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 ‘(1)’의 ELS형 펀드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의 지수를 매 주기 상환평가일 마다 관찰하여 조기상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조기상환 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된다. 이때,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ELS형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이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다.
- (3) 회사는 ELS형 펀드 각 호수 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상기 주요내용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된 이후 재투자가 실행되기 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자는 투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4)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1)’의 ELS형 펀드에 투자한 계약자 중 일부 계약자의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상환 전 중도환매로 인한 손익이 잔여 계약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
- (6)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7)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에서 규정한 ELS형 펀드만 선택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되며 별도의 선택이 없을 경우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된다. 다만, ELS형 펀드 투입비율 선택은 해당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라. 쿠폰인출에 관한 사항

- (1) ELS형 펀드에서 투자하는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의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을 충족하여 발생한 수익률을 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이라 한다. 회사는 발생한 쿠폰에서 연기준 1.5%p를 차감 후 「쿠폰발생일 + 제1영업일」(이하 ‘쿠폰이전일’이라 한다)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④ MMF형 펀드로 이체한다. 쿠폰발생일은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의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실제로 현금이 ELS형 펀드로 이체된 날을 말한다.
- (2) 회사는 쿠폰이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쿠폰인출일’이라 한다)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쿠폰인출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ELS형 펀드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쿠폰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②에 해당하는 사유로 쿠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쿠폰인출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못한 경우
 - ② 투자한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서 정한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다. 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한 경

우 쿠폰인출금액은 감소(또는 미지급) 될 수 있으며, 쿠폰인출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쿠폰인출금액 및 쿠폰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 할 수 있다.

- (5) 지급계좌의 해지, 휴면 또는 지급계좌 변경 미통보 등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쿠폰인출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된 쿠폰인출금액은 MMF형 펀드에서 운영되고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 (6) 'Go-Stop'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쿠폰지급중지(이하 'Stop'이라 한다) 및 쿠폰 지급중지 종료(이하 'Go'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Stop 및 Go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Stop 또는 Go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 제1영업일」부터 적용한다.
 - ③ Stop을 신청한 계약의 경우 미지급된 쿠폰인출금액은 MMF형 펀드에서 운영되며, 이후 Go를 신청하여도 Go 신청이전 미지급된 쿠폰인출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범위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ELS형 펀드'이외 펀드에서 'ELS형 펀드'로 계약자적립금 이전은 해당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3)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바. 특별계정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운용보수
주가지수 ELS 인컴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00%(매일 0.001643836%)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00%(매일 0.000821918%)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70%(매일 0.000465753%)
MMF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2)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주가지수 ELS 인컴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00%(매일 0.000821918%)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MMF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0%(매일 0.000027397%)

(3)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수탁보수
주가지수 ELS 인컴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5%(매일 0.000041096%)
국내주식형	
글로벌채권형	
MMF형	

(4)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주가지수 ELS 인컴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7%(매일 0.000046575%)
국내주식형	
글로벌채권형	
MMF형	

(5)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1)' 내지 '(4)'에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①'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ELS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개별 호수(예: 인컴형 제1호, 인컴형 제2호 ...)별로 각각 별도로 산출한다.

- (3)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①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①'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①'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차.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

된 계약의 계약자에게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기타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2)'에 따라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 (3)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쿠폰인출금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 (5)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6)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7) 일반계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이체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0.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 계약은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21.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및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22. 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일반계정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신청 받은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 (2)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 (3)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나. '가'에 따라 전환되는 계약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함)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한다.

다.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된다. 일반계정으로 전환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

23.기타

가.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분기별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다.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한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9%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관련법규의 준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사.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관리비용)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의 합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